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민·형사상”을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으로, “법 제44조의10”을 “법 제44조의18”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기하려”를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제기하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3항”을 “법 제44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를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를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를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제35조의5(공인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3. 신고 대상 정보가 게시된 상세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
4.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5.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제35조의8(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이란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윤리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범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의9(사실확인 단체 활동사항)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②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 이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10(투명성 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6조의 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을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7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를 각각 제36조의6부터 제36조의13까지로 한다.

제36조의6(중전의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하고,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

2.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또는 수익 현황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법 위반 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

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의4(과징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5(강제징수의 위탁) ①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6조의2 앞의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삭제한다.

제36조의6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2조제1항제3호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전송·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검색 서비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별표 1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2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법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 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천만 미만

2) 1)의 표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 여부, 유통의 방법 및 수단, 해당 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피해자에 대한 금품 등 요구 여부, 조사 협조 여부, 피해자 구제 노력 정도, 위반행위 시정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가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u>별표 1</u> 과 같다. ② (생 략)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2. (생 략) 3. 그 밖에 <u>민·형사상의</u> 소재기를 위하여 <u>법 제44조의10</u>에	<u>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u>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 ----- ----- <u>별표 1</u> <u>의2와</u>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법 제44조의20에</u>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생략)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

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

· 형사상--- 법 제44조의18-

--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 분쟁조정부-----
-----.

1. (현행과 같음)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제기 하려-----

3. (현행과 같음)
- ② 분쟁조정부-----

-----.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

조정부-----

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 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

② 분쟁조정부-----

-----.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쟁조정부-----

-----.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

-- 법 제44조의7제4항-----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

-----.

1.·2.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6항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3. (생략)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

-----.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

-----.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
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
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
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
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 ④ (생 략)

<신 설>

----- 별
표 1의3-----

나. -----

----- 별
표 1의3-----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
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
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
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
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
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
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신 설>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제35조의5(공인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신 설>

<신 설>

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
4조의12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
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표자의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3. 신고 대상 정보가 게시된 상
세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
보의 위치
4.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5.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증빙 자료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14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제35조의8(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이란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윤리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범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의9(사실확인 단체 활동사항)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②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

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 이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

<신 설>

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
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에 필
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⑥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
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
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10(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u>화 사업</u> 3. <u>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u> 4. <u>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u> 5. <u>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u> 6. <u>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u> 7. <u>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u> 8. <u>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u>명예훼손분쟁조정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정부의 장이 소집한다.</u>	제36조(분쟁조정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u>분쟁조정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u> -----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
 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
 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
 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
 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
 한다.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
부-----

 -----.

③ 분쟁조정부-----

 -----.

④ 분쟁조정부-----

 -----.

⑤ 분쟁조정부-----
 -----.
 ----- 분쟁조
정부-----

 -----.

⑥ -----
분쟁조정부-----

 -----.

<신 설>

제36조의2(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

2.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

<신 설>

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또는 수
익 현황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
위를 조사·확인한 후 법 위반
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
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
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
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

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기본법」 제29조

<신 설>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의4(과징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신 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5(강제징수의 위탁) ①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신 설>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란 별표 1의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
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
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
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
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
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
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채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
행상황

<삭 제>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

----- 별표 1의5-

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2. (생략) <u>제36조의3</u> ~ <u>제36조의9</u> (생략)	----- ----- ----- ----- -----. 1.·2. (현행과 같음) <u>제36조의7</u> ~ <u>제36조의13</u> (현행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9까지와 같음)
--	--